



13 헌법자문위원회 보고

제105회기 헌법자문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종희
서 기 윤두태

1. 조직

- 위 원 장 : 김종희
- 회 계 : 최득신
- 서 기 : 윤두태
- 위 원 : 김철중 심요섭

2. 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10. 27(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김종희 목사

서기: 윤두태 목사

회계: 최득신 장로

총무: 김철중 목사

위원: 심요섭 장로

② 총회 헌법자문위원회 운영규칙(내규)안은 별지 제7조(정족수) ②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별첨 참조).

수정 전	수정 후
② ... 위원은 이에 동의한다.	② ... 위원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위원회에 수입된 105회 총회 결의사항 중에서 질의 현의 건들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이 자문 안을 작성하기로 가결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4. 19(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 심요섭 장로의 사임은 받기로 하다.

② 제14차 총회임원회의 자문 요청 건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가. 기관목사 자격에 관한 부산노회 질의 건 - “총회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7항과 동 제10장 제3조에 의거, 총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은 기관목사는 정회원으로서는 발언권과 가부권이 있다(총회나 노회 이외의 교회 관계기관에서 사역하는 경우도 총회와 노회의 허락을 받

은 경우는 동일.)”

- 나. 타 노회에서 제명된 목사를 본 노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평노회의 질의 건 -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된 경우이면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54조에 의거하여 타 노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재판결과 치리를 받은 경우는 제97회 총회 결의에 따라 타 노회에 가입할 수 없다.”
- 다. 노회 구성요건과 관련(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하여서는 “노회의 조직 요건은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의거 21당회 이상을 요구하고, 노회 조직 후 21당회 미만이 되면 제105회 총회결의에 의거 흠결이 된다.”로 정리하되, ‘흠결노회 복구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1. 5. 3(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5차 총회임원회의 자문 요청 건(시무목사와 폐당회 된 위임목사가 시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진주노회의 질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별첨 자료)과 같이 보고하기로 하다.

시무목사는 정치 제102장 제6조 9~11항과, 제103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시찰장이 될 수 없다. 폐당회 된 위임목사는 정치 제9장 제1조와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제102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시찰장이 될 수 없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1. 5. 28(금) 14: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7차 총회임원회의 자문 요청 건(동부산노회(부전교회) 질의 건, 대전중앙노회 질의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대로(붙임자료) 보고하기로 하다.



헌법자문위원회 최종보고

1. 제105회 총회 수임사항

- 1) 총회헌법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
- 2) 당회 개회 성수 시 당회장과 재적 장로 과반수로 출석하도록 하는 바, 의결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
- 3) 총회 재판 시 제척 사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 질의의 건
- 4) 재심 청구를 받은 노회가 언제까지 재심을 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

2. 위원회 결론

1) 당회 결의 정족수 관련

(1) 헌의내용

서광주노회(노회장 노갑춘 목사)는 당회 개회 성수 시 당회장과 재적 장로 과반수로 출석하도록 하는 바, 의결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으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즉 지금까지 당회장과 당회원을 합하여 과반수만 되면 의결이 되었는데 당회장을 제외하고 장로의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2) 위원회 검토의견

- ① 지금까지 의결방법이 옳다고 본다. 즉 당회장과 당회원이 합하여 과반수가 되면 의결이 된다. 만약 출석 장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면 장로 2명이 있는 당회에서는 장로 2명이 모두 출석을 하였을 경우 장로 2명이 모두 찬성해야 의결이 되므로 만약 두 장로가 담합하면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다. 당회장의 가부권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 ② 정치문답조례 613문 치리회 회장의 직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12항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이면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재표결한다. 재표결해도 역시 가부 동수인데 회장이 결정권 행사를 거부하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하였다. 당회원의 의견이 동수가 될 수도 있기에 회장이 가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된다면 당회원이 동수가 될 경우가 없어진다. 즉 당회장이 가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없어서 장로회법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지금대로 의결방법이 옳다.
- ③ 제7회 총회에서 정치문답조례 제618문을 본 총회 규칙으로 채용하기로 결의하고 부록한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8항에 “치리회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하였다. 즉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참석 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된다.
- ④ 헌법 정치 제21장 5항(회의)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반수로 의결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당회 의결도 참석한 목사 장로의 구별 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 ⑤ 목사직과 장로직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사직과 장로직이 1:1이어야 하므로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회장의 찬성과 당회원(장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표결결과가 동수일 때 목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613문 12항) 또한 장로가 숫자로 목사를 압도하여 결정하려고 할 경우 표결 결과를 선언하는 권한은 목사에게

게 있다(정치문답조례 613문 13항). 이런 조항만 가지고도 장로나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굳이 정관에 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만들려고 하다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해 온 의결방법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2) 총회 재판 시 제척 관련

(1) 현의내용

동대전제일노회(노회장 소선민목사)가 총회 재판 시 제척사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질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적 해석을 질의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제척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위원회 검토의견

- ① 세상 재판과 교회 재판의 제척사유가 다르다. 세상 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1조 3항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5항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또한 형사소송법 17조 7항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이 된다. 즉 재판에 관계되는 증언을 하거나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 사유가 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
- ② 그러나 교회 재판은 다르다. 권징조례 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증인도 제척사유가 되지 않고 치리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41항에 조사에 관여한 위원도 재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 ③ 다만 하회의 사건이 상회로 올라올 경우 권징조례 91조와 98조에 의거, 그 사건에 관계된 소원(상소)인이나 피소원(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즉 하회에서 올라 온 해당 사건을 다룰 때만 제척 사유가 된다.

3) 재심기간 관련

(1) 위원회 검토의견

- ① 권징조례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중급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끝난 후에 어느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새 증거가 발견되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권징조례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급(緊重)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판 중에 발견된 새 증거는 재판 기간 안에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즉 재판 기간 중에 발견된 새 증거로 재심을 할 경우는 치리회가 재판 기간 안에 재심을 명할 수 있고 재판이 종료된 경우에 발생한 새 증거는 피고가 기간 구애받지 않고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
- ③ 재심재판을 착수하였을 경우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박병진 목사 헌법대전 p. 1011 “재심하기로 가결되면 치리회는 새로운 재판 사건 처결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노회는 회기가 나누어져 있고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 재심재판이 가결되었으면 다음 정기회 때까지 재판해야 하고 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 연장해야 한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헌법자문위원회 연장 청원 건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총회가 장로회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일관되고 전문성 있게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위원회의 임무를 1년 연장하여 주시되, 위원의 선임은 총회임원회에 맡겨주실 것을 청원하니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총회헌법자문위원회 운영규칙(내규)

2021년 9월

헌 법 자 문 위 원 회

위원장 김종희

서 기 윤두태

[별첨]

총회 헌법자문위원회 운영규칙(내규)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자문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회관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헌법 제12장 제5조에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에 따라 헌법에 관한 연구를 하며 해석과 판단에 대한 요청이 있거나 본 회가 필요를 인정할 경우 자문을 담당한다.

제4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서기, 회계, 총무

제5조(활동업무) 총회와 각 기관과 당회와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한다.
개인이 자문을 요청할 때는 당회(당회장)와 노회(노회장, 서기)를 경유하여 신청할 때 자문한다.

제6조(활동절차) ① 총회(임원회)로 자문을 신청한 경우 총회(임원회)가 본 회로 자문을 지시할 때 자문하여 보고한다.
② 본회에 자문을 신청한 경우 자문한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추후 보고한다.
③ 총회(임원회)에서 자문이 필요하여 위원장(위원)을 임원회에 출석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한다.

제7조(정족수) ① 본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이메일이나 SNS, 단독창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의견일 경우 답변한다.(의견표시가 없을 경우 과반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시급한 경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과반수가 의견 표시가 없을 경우는 위원장과 서기의 의견으로 답변하고 위원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공표) 자문한 사안은 전국 교회에 알려지도록 위원장에게 맡겨 정리하여 언론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9조(기타) 본회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끝.